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요건 등 정비 -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63호에 따라 입법예고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최종 반영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대외 무역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18885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의 기준을 ‘1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로 완화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

1. 자료조사 방식으로 변경(영 제57조의2)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검사방식을 서류 위주 검사에서 자료조사방식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제57조의2(서류검사) 법 제3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수입한 물품등의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서류 2. 수입한 물품등의 가격, 수량, 품질 및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원산지의 표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7조의2(자료조사) ----- ----- 자료 ----- 1. ----- -- 자료 2. ----- ----- 자료 3. ----- ----- 자료

2.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요건 완화(영 제59조의2)

과징금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되던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허용 요건을 완화함

현 행	개 정
<p>제59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p>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 무자”라 한다)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u>1억원 이상인</u>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59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p> <p>① ----- ----- ----- 1천만원 이상이 ----- 거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 ----- -----</p>

3.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시 가중 또는 경감 요건 보완(영 제60조제2항)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보완함

현 행	개 정
<p>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p>	<p>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p> <p>② ----- ----- 규모, 중소기업 여부, ----- ----- -----</p>

- 계 속 -

4.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대상 확대 등(영 제66조 및 제90조)

수출 물품에 대해서만 발급되던 원산지증명서를 국내생산품에 대해서도 발급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표현을 수정함

현 행	개 정
<p>제66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p> <p>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으로 한다.</p> <p>②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 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수출 물품의 가격·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66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p> <p>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출 물품 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협정에서 정한 기준 2.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기준 3. 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 <p>② --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 등의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행과 같음) 2. 가격·수량 ----- 3. -----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 ----- <p>③ ----- ----- -----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 등 ----- -----.</p> <p>④ ----- ----- 협정 ----- ----- -----.</p> <p>⑤ -----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 ----- ----- -----.</p>
<p>제90조(수수료)</p> <p>법 제37조에 따라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제90조(수수료)</p> <p>-----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 ----- ----- -----.</p>

5. 과징금 관련 세관장 등의 위탁업무 추가(영 제91조 제6항제1의3)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관세청장에 위탁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p>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p> <p>① ~ ⑤ (생 략)</p> <p>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p> <p>1.1의 2. (생 략)</p> <p> <신 설></p> <p>2.3. (생 략)</p> <p>⑦ ~ ⑫ (생 략)</p>	<p>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p> <p>1.1의 2. (현행과 같음)</p> <p> 1의3.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권한</p> <p>2.3. (현행과 같음)</p> <p>⑦ ~ ⑫ (현행과 같음)</p>

III. 시행일

-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대외무역법 시행령_개정문 개정이유
- [붙임2] 대외무역법 시행령_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3] 대외무역법 시행령_전체 제정·개정문

I Contact



김성근 관세사
T 070-4353-5152
E skkim2@esein.co.kr



전소연 관세사
T 02-6011-3101
E syjeon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